

관세평가분류원, K-푸드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신속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심사를 통해 수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나서

관세평가분류원이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심사에 나서며 농수산물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7월 14일(화)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영어조합법인 ‘완도맘’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현장 심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국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은 제조업체와 물류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수산물 수출업체가 공인을 신청한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 수산물 등 K-푸드 수출기업 완도맘은 2024년 약 23억 원, 2025년 약 28억 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36억 원의 수출액을 달성하며 연간 최대 실적 경신이 관측되고 있다. 특히 올해 활전복의 중국 판로를 개척하여 약 14억 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 (주요수출품목) 활전복, 김, 미역 등 / (주요수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등

신선도 유지가 경쟁력의 핵심인 활수산물은 수입국에서의 신속한 통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나라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국가에서는 공인기업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완도맘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과 중국 간 체결된 AEO MRA에 따라 중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통관 소요 시간을 단축하여 활전복의 폐사 위험을 줄이고,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현장 심사를 통해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농수산물 수출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통관 소요 시간에 민감한 농수산물의 특성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은 단순한 안전 인증을 넘어 직접적인 수출 경쟁력 확보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K-푸드 기업들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개요

담당 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과	책임자	과 장	김천완 (042-714-7570)
		담당자	주무관	오창진 (042-714-7574)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개념

-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기업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 후 신속통관, 검사생략 등 혜택 제공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근거) 관세법 §255의2 ~ 7

※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을 위해 미국이 채택한 CTPAT제도를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05)한 이후 전세계 97개국이 도입·시행 중

□ 공인대상 및 업체수

- 9개 유형*의 수출입 관련 업체

*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물류 6개부문(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선박회사, 항공사, 하역업자)

('26. 6. 기준)

구 분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총 계
전 체	315	196	102	398	1,011
중소기업	139	20	99	296	554
비 율	44.1%	10.2%	97%	74.3%	55.1%

⇒ (수출업체 주요 업종) 자동차 부품 제조, 전자 부품 제조, 반도체 소자 제조 등

□ AEO MRA*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개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 기업을 교역 상대국에서도 인정하여 세관 검사 축소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상호 제공하는 당국 간 약정
- (체결국가)

국 가 명	국가 수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대만, 인도, 호주, 싱가포르,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캐나다, 태국, UAE, 뉴질랜드, 이스라엘, 페루, 도미니카(공),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몽골, 우루과이	25개국

- (혜택) ①수입 검사율 축소 및 우선 통관, ②서류심사 간소화, ③천재지변 및 국경 폐쇄 등 비상시 우선 조치, ④세관 연락관 상설 운영